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27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박은정 · 황운하 · 신장식
이해민 · 최혁진 · 김준형
진선미 · 서왕진 · 강경숙
백승아 · 박상혁 · 김재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강도강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49조제1항제3호는 삭제되고, 같은 항 제4호가 제3호로 변경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은 여

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를 인용하고 있어,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이 인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생 략) ② ~ ⑧ (생 략)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제49조제1항제3호-----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	--